



# 청과물포장 표시

## Labeling which is required for Fruit and Vegetables

今野 哲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생산자재부 자재과

### 1. 서론

식품의 표시에 관해서는 크게는 생선품(가공되지 않은 청과물)으로 말린 표고 및 컷트 채소믹스 등의 가공품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선품의 의무표시항목은 「명칭」·「생산지」뿐이지만, 가공품이 되면 의무표시항목만이어도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기간표시」, 「보존방법」, 「제조자」로 되어 있다. 청과물은 「생선품」으로 해당하는 표시 의무항목은 적지만, 표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틀리거나 하면 상품회수를 부득이 하게 당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청과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면 안 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과 같이 식료자급율이 40%의 식료수입대국에 있어서는 양의 확보와 함께 식품의 안전·안심이 요구되고 또 생산지와 소비지가 떨어져버린 현재의 청과물유통의 경우에는 정당한 표시만이安心的 지지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상품규격에 있어서 청과물을 시작으로 한 상품은 위생규범이 강하게 요구되어지게 되고, 규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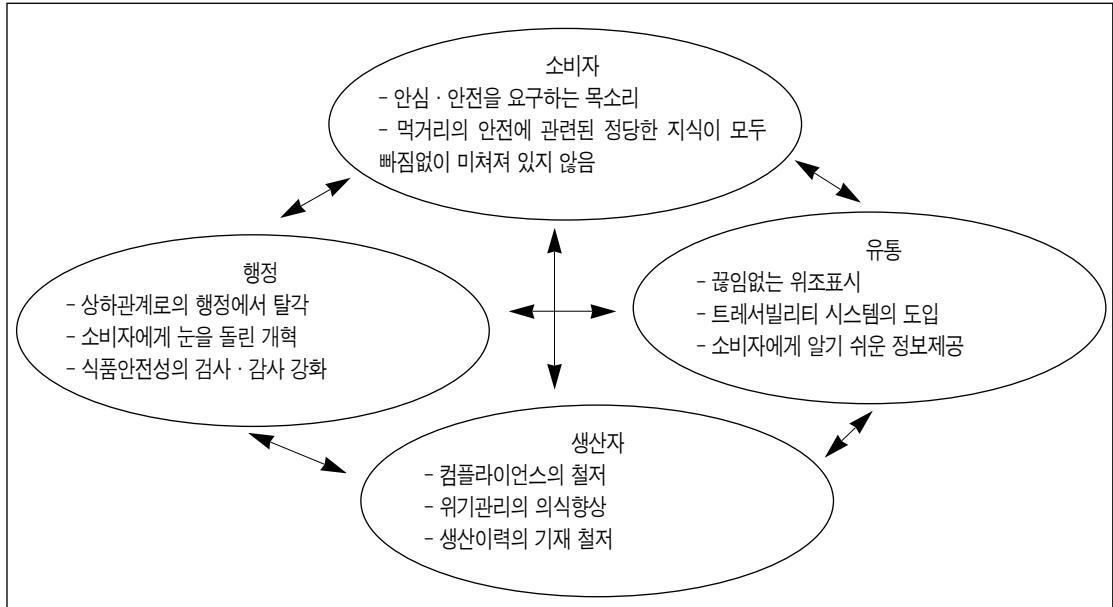
써 Codex, ISO, HACCP, GAP 등이 알려져 있다. BSE를 시작으로 한 감염증에 의한 건강위험에 대한 불안, 농약·항생물자·식품첨가물 등 화학물자의 잔유에 의한 건강위험에 대한 불안, 유전자 교환 작물과 같은 신규식품에 대한 미지의 위험의 불안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은 단숨에 높아지고 있다(그림 1).

「트레이스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커버되어 있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성은 보상되지 않는다」, 「안전하다고 설명되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한다」 등 소비자의 요구는 점점 더 고도로 강력한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일과성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계속되는 인간 본능에서 나온 요구이며,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어서는 비용이 드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한 농업 및 건강을 생각한 농산물생산과 가공식품제조를 담보하는 트레서빌리티의 확립 및 정직한 표시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청과물표시에 관계되는 제법령의 포인트, 표시할 때의 주의점을 설명한다.

[그림 1] 식품안전에 관한 세간을 둘러싼 환경



## 1. 청과물 표시 관련 법령

청과물을 취급하다고 하는 때에, 다양한 법령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주된 것은 [표 1]에 나타냈다.

### 1-1. JAS법

농재물자의 품질의 개선, 표시의 적정화 등을 계획하는 관점부터 쇼와45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품질의 기준과 표시의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농재규격(JAS규격)과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에 필요한 사항의 표시에 관련된 품질표시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소비자에 식품의 품질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농산물에 관련된 표시의무화는 「명칭」과 「원산지」이다.

1) 명칭 : 오이, 수박, 멜론, 사과 등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한다.

모모타로우(토마토), 남작(감자) 등 품종명이 있어도 업계 이외의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전해져 있는 것은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 패키징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강연 타이틀

통칭	정식명칭	관할성청
가 JAS법	농재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농재수산성
나 경표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공정거래위원회
다 부경법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산업성
라 계량법	계량법	경제산업성
마 자원유효 이용촉진법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산업성
바 건강증진법	건강증진법	후생노동성

그 외 : 독금법(일부), 신통수가이드라인, 상표법, 종묘법, 약사법, 등



[표 2] 계량법

표시내용량	양목공차
100g을 넘고 500g이하	±3%
500g을 넘고 1.5kg 이하	±15g
1.5kg을 넘고 10kg 이하	±1%

2) 원산지 : 기본은 도도부현명을 기입한다.

또 일반적인 지명(신슈, 아와지시마, 사츠마 등)도 가능하며, 유통업자는 골판지 등의 용기포장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용하는 컨테이너 등, 용기에 표시 불가능한 경우는 운송장 및 납품서에 표시를 행하면 문제가 없다.

그 외에도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시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유기 JAS 마크

「유기농산물」 :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 및 농약을 파종 전 2년 이상의 사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산부터 출하까지의 생산과정 관리기록의 작성이 요구된다.

「인증」 : 농수대신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등록 인정기관(제3자인정기관)이 생산자를 인정한 경우, 유기JAS마크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인정 후도 정기적으로 인정기관의 체크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② 특정JAS : 특색있는 생산방법 및 원재료에 착목한 인증제도

③ 생산정보공표 JAS : 생산정보를 공표하고 있는 식품에 생산정보공표 JAS마크를 붙이는 제도

④ 유통 JAS : 유통단계의 행정을 관리된 사업자에 대하여 유통단계의 트레이서빌리티를 목적으로 하는 인정제도로, 특색 있는 유통으로써 인

정한다. 그러나 식품유통에는 복수의 업자가 관계되어 있으며, 주도자와 확인자가 과제로 되어 있다.

후보로써는 엄밀한 온도관리품목(아이스 등), 제철표시유통(기능성포장) 등을 들 수 있다.

1-2. 경품표시법

소비자를 유혹하는 과대 경품 부착 판매 및 과대한 광고, 부당한 표시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확보한다. 사업자간에 품질 및 가격 등의 본래적 경쟁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일반소비자에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1-3. 부정경쟁방지법

사업자간의 공평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4. 계량법

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고, 그 때문에 경제의 발전 및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선채소는 내용량의 표시를 의무로 하고 있는 특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는 양목공차(허용된 오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표 2).

1-5.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순환형사회를 형성해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3R(리듀스·리유즈·리사이클)의 대처를 총합

[그림 2] 재질별 마크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소비자의 분별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분별구분의 표시(식별표시)를 행해야만 하는 용기포장을 특정하고 있다.

헤이세이 13년 4월부터 실시되어, 헤이세이 15년부터는 권고·명령·벌칙 등의 규정도 적용되도록 되었다. 청과물포장에서도 플라스틱제의 필름봉투 및 팩, 종이제 트레이 등에 관해서는 식별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로 되고 있다. 또한 골판지에는 식별표시의무는 없고 임의표시로 되고 있으나, 골판지업체의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골판지의 식별표시를 행하고 있다.

## 2. 우량성 강조표시

식품·청과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상기의 관계 법령·기준 등에 따라, 적정·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 우량성 강조표시에 있어서는 소비자를 대하여 명확히 설명 가능한 것이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하는 자에게 있어서 부당표시라고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에 반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나, 근거가 없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게 된다. 상품의 강조표시가 부당표시에 해당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품질의 객관적인 우열이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우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는가, 어떤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시방법(현물, 포스터) 외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따를까, 상품전체의 인상, 지역성, 시장상황 등을 총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량성을 나타내는 용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생각을 아래에 표시하나, 판단은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된다. 또한 문 중간에 있는 「X」, 「▲」,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나, 구체적인 해석, 불명확한 점 등은 가장 가까운 농재수산 소비기술센터에 상담할 필요가 있다.

- 1) 「X」 - 학술자원 및 실험 데이터 등 합리적 근거가 필요한 표현.
- 2) 「▲」 - 상기의 자원·데이터는 불필요하지만, 표시의 정의·이유의 덧붙임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이는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표현.
- 3) 「○」 - 사실을 따르는 표시라면 원칙사용가능이라고 생각된다.

### 2-1. 「X」

상품의 효과, 성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다.

- 1) 표시 : 자양강장, 여성의 피부를 건강히 유지, 변비가 낫는다, 고혈압·콜레스테롤의 분해에 효과, 식욕증진, 면학능력을 높임, 혈액을 정화한다.
- 2) 생각 : 실증적인 데이터 및 학문적 연구 성과 등의 뒷받침이 없으면 부당표시라고 간주될 위험이 대단히 강함. 또 건강증진법, 약사법 위반의 위험도 있다.



### 2-2. 「▲」

상품의 효과, 기능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다.

1) 표시 : 헬시, 프레쉬&헬시, 미용과 건강에, 건강채소, 건강식품, healthy&beauty, 기운이 솟음, 신체에 좋음

2) 생각 : 이것들의 표현자체로 부당표시라고 간주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 또 다른 표시와의 조합순서에서 부당표시라고 간주된다. 그러므로 뒷면에 데이터가 없어도 근거 및 이유 덧붙임은 준비해야만 한다. 식품이 건강에 공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워 강조 가능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표시해야만 하지는 않다.

### 2-3.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표시

1) 분석데이터가 명확하고, 또는 비교의 대상이 명확한 표시 「○」

① 표시 : 비타민C가 약3배(비교대상을 표시), 칼슘이 약2배(동)

② 고 생각되고,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영양성분의 변동 폭에도 요주의

2) 의미내용이 애매한 비교표시 「▲」

① 표시 : 특선, 고급, 최고, 첫번째로 맛있음, 맛 첫번째, 고영양채소, 자양풍부, 영양풍부, 본저장, 스페셜, 엄선된, 제일인자, 수제, 풍부

② 생각 : 위의 나.와 같다. 다만 최고 및 첫 번째를 의미하는 표시는 뒷면에 덧붙임 없이 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엄선된」이라면 무엇(예를 들어 원료인지,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인가의 필요하다.

3) 그 외보다도 신선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

① 사실에 따르고 있는 비상식적인 범위의 표시 「○」

· 표시 : 신선, 신선채소, 프레쉬

· 생각 : 추상적인 신선을 나타내는 표시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사용하는 한 문제가 없다. 다만 소비자 및 소매점에서의 실문도 상정되기 때문에, 수확일·출하일의 기록 등 설명자원은 준비해두는 쪽이 좋다.

② 근거 및 이유가 필요 「▲」

· 표시 : 아침에 탄, 갓 탄, 막 따서 신선, 갓 썬, 싱싱하다

· 생각 : 신선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갓 탄」 등은 매우 단기간으로 확실하게 판매하는 때, 「아침에 탄」은 당일 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에 한정해야만 하는 표현이며, 소비자가 점두에서 표시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학술·실험데이터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예상된다.

4) 보다 안전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 「▲」

① 표시 : 수경청정재배, 청경, 청경재배, 완전청경, 안심, 안전

② 특별한 안전확보조치를 꾀한 것 이외는 나타내야만 하지는 않다. 표시하는 경우는, ○○선경한 청경품, 생산이력이 확인 가능한 안심작물 등과 같이 구체적인 표시를 하면 사실인 한 부당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및 이유가 필요하다.

### 2-4.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1) 표시 : 발농사, 고랭지, 고원에서 자란, 스테비아재배, 입체재배, 진공예랭, 완전예랭, 무선

과, 무표백, 원지직송, ○○상 수상

2) 생각 : 사실이려면 문제가 없지만, 고랭지, 예랭은 정의를 확인하고 또 완전은 정의를 확실히 시키는가, 또는 삭제해야만 한다. 수상은 항상 어떤 상인가를 명기하고, 재배방법해서 수상했는데 맛으로 수상했다라는 식의 오인을 부르는 표시는 불가능하다.

### 2-5. 주관적인 사항에 관해서의 우량표시

1) 표시 : 테이스티, 프레쉬한 향, 달콤함, 맛있음, 맛남, 풍미가 진한 맛있음, 마일드, 이 달콤함, 단술정도로 잘 조화, 방순

2) 생각 : 이것들의 표시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려우나, 원지 측의 주관적인 호소(표현)이며, 동시에 그 점이 일반소비자에게도 알 수 있는 표시이며, 소비자 각인에 의하여 평가가 다른 사항이

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 이외는 부당표시가 되지 않는다.

## II. 결론

청과물포장에 관해서는 JAS법에 의한 명칭·원산지표시의무 외에 상품가치향상을 위한 유기JAS 등의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또 표시용어에 의한 차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용어의 사용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표시를 해야만 한다. 특히 「표시금지사항」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또 표시에 있어서 전반에 관련하지만, 상표등록을 하고 있어도 내용에 의해서 근거 및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안심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이한 강조표시를 하지 말아야만 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표시내용을 결정해야만 한다. [K]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